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안내

제 2022-179호

♣ 교무실 251-5811 ♣ 행정실 251-5809 ♣ FAX 251-5813  <http://www.cjsb.es.kr>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접속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는 더욱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사생활·성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인터넷 성매매알선·홍보, 몸캠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모두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은 남녀 및 나이를 불문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친구간의 가벼운 장난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디지털 성범죄 가·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올바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등 성폭행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2. 디지털 성폭력이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한다.

□ 디지털성폭력 유형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유통, 공유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 협박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사진 합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되었다면?



□ 디지털 성폭력의 올바른 이해

<p>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 아닌가요? NO!</p>
<p>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다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p>
<p>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NO!</p>
<p>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p>
<p>03.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재유포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NO!</p>
<p>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서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삭제 비용 또한 무료이며 이 외에 수사나 법률, 의료, 심리 치유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p>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사이버 경찰청	☎ 112
청소년 상담전화	☎ (지역번호+) 1388
여성긴급전화	☎ 1366(365일, 24시간), 긴급구조 및 보호를 위한 상담, 전문기관 연계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친구 맺기 후 상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365일 24시간, ☎ 02-735-8994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상담, 삭제, 수사연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02-817-7959 평일 13:00~17:00 피해자 상담, 삭제서비스 연계, 수사, 법률지원, 심리치료 지원

□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p>예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스마트폰 채팅앱 주의! ·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 채팅앱 이용 시,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 경우 → 절대 만나지 않기 대가성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않고 캡처해서 신고하기 · 나이, 주소, 학교,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요구 → 거절, 대화중단 · 얼굴이나 몸 등 사진전송을 요구할 때 → 응하지 않고 대화 중단 · 성적인 욕설, 사진, 영상 등을 받았을 때 → 대화 중단하고 신고 · SNS에서 성적인 자료를 봤을 때 → 신고/스팸 누르고 저장/유포하지 않기 · 사진 유포 등 협박을 당할 때 → 즉시경찰에 신고, 지원기관 또는 어른에게 알리고 도움요청하기, 두려워도 피해내용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로 보관하기
-------------------	--

우리 모두 약속해요, 안전한 온라인 세상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 ✓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합니다!
-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줍니다!
- ✓ 아동·청소년의 피해사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366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366(☎지역번호+1366),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물 삭제, 수사 근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호자·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 행동 안전수칙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의 의견을 들어 제작하였으며, 대상 연령 및 학습 현장 등을 고려하여 수칙 내용을 변경해 사용 가능합니다

2022. 10. 31.

전 주 송 북 초 등 학 교 장